

#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상담 사례

## ✓ 상담 내용

- 근무시간 중 유관기관(○○진흥원) 업무관련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신고절차 문의

## ✓ 상담 답변 내용

### <1단계 : 복무처리 >

- ① 'e-사람' → 복무 → 근무상황 또는 출장처리
- ②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 '출장' /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 '연가'
  - 허가를 위한 사전결재가 포함되므로 **출장이나 근무상황 결재신청 시**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**접수된 공문서를 반드시 파일 첨부**(검직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)
    - \* 공문서가 아닌 전화 또는 e-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요청은 불가
  -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출장여비를 지급받아서 안 됨(**여비 중복수령 금지**)

### <2단계 : 외부강의등 신고 >

- ① 'e-사람' → 복무 → 근무상황 → 외부강의.회의등의 신고 및 변경 → 외부강의신고
- ② '외부강의신고'창이 열리면 아래 진행 절차에 따라 입력
  - 신고자 : 자동으로 생성(연락처 확인 요망)
  - 기본정보
    - 신고일자 : 자동으로 생성
    - 강의주제 : 강의주제를 구체적으로 입력
    - 근무상황처리 : 직무와 관련있는 경우 '**출장**',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 '**연가**' 지정
    - 통보여부 : 반드시 '**예**'를 지정
    - 통보대상자 : **외부강의신고 통보대상자**를 지정(운영지원과 서무주무)
  - 요청기관 : **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에 근거하여** 각 항목 입력

- 강의대가 : **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에 근거하여** 각 항목 입력
  - 총대가 : **여비를 제외한 사례금** 총액을 기재
  - 교통비·숙박비·식비(실비) : 여비만 별도 기재
  - 1회평균 : 여러 회 강의를 나갈 경우 기재
- 첨부파일 : **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서를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함**
- 강의기간 : 시작일자, 종료일자, 강의시간 등 명확하게 입력
- 결재자정보 : 강의공무원이 소속된 **부서장**을 결재자로 지정

✓ **조치사유 :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행동강령(훈령 제365호)**

**【외부강의 신고 대상】**

외부강의 해당 사례	외부강의 등 해당하지 않는 사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례금을 받는 강의</li> <li>◦ 국가기관 등 이외에 요청 (예)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aT농식품유통교육원 등</li> <li>◦ <b>국립대학교(병원)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</b> (예) 서울대학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례금을 받지 않는 강의</li> <li>◦ <b>국회, 국가기관, 지자체, 국립대학교(산학협력단) 요청</b> (예) 농식품공무원교육원, 농업기술센터 등</li> <li>◦ <b>검직허가를 받은 경우</b>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강의·강연</li> <li>◦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발표·토론·심사·평가의결 등</li> <li>◦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</li> <li>◦ 공청회·간담회 등의 좌장</li> <li>◦ 온라인 동영상 강의</li> <li>◦ 신문·잡지에의 기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 참여</li> <li>◦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출제 회의 참석, 시험문제 출제</li> <li>◦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 작성</li> <li>◦ 언론 인터뷰, 스포츠 해설, 방송 예능프로그램 출연</li> <li>◦ 1:1이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·자문</li> <li>◦ 방송사 아나운서의 행사 단순 진행</li> </ul>

## 참고사항 : **【법 개정(20.5.27일 시행)에 따른 변경사항】**

-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**10일 이내 신고** (사전신고 가능)
- 1시간당 상한액 **40만원** / 1회 총액한도 **60만원**
- **월 3회 초과금지**
  - 사례금을 받지 않는 강의, 국회·국가기관·지자체·국공립대학교(산학협력단) 요청, 검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
  -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는 기관장의 사전 승인 필요
- 외부강의 등 **신고사항**과 실제 강의등 수행한 사항이 다를 경우 "**변경 신청**"하여 다시 결재요청
- **사례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** 지체없이 반환하고 초과 사례금을 안 날로부터 **2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실로 신고**